

순천시 공고 제2024-225호

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24일

## 순 천 시 장

###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- 상위법 개정에 따라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
-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 휴가 신설을 통한 장기재직 동기 부여·사기진작
- 출산장려휴가 분할 사용 기준 마련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

#### 2. 주요내용

- (안 제16조) 상위법 개정에 따른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
  - “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” 조항 신설
- (안 제17조 3항) 재직기간 5~10년차 장기재직 휴가 신설 : 5일
  - 가.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: 5일
- (안 제17조 6항) 성별영향평가 개선안 반영 : 입영 → 입대
  - “입영 자녀”, “입영 시” → “입대 자녀”, “입대 시”
- (안 제17조 8항) 출산장려휴가 분할 사용 기준 마련
  - “분할하여 사용 할 수 있으며, 사용기준은 제3항 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”

#### 3. 입법예고 기간 : 2024. 1. 24. ~ 2024. 2. 13.(21일간)

#### 4. 의견제출

○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(총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: (전자메일) shk5517@korea.kr (팩스) 061-749-4614

#### 5. 그 밖의 사항

○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총무과(☎ 061-749-561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 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 끝.

## 「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
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,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(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)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17조(중전의 제16조) 제3항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입영 자녀” 를 “입대 자녀” 로, “입영 시” 를 “입대 시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“있다” 를 “있고,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사용기준은 제3항 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” 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가.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: 5일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 
자녀의 입영 시 2일의 휴가를 받  
을 수 있다.

⑦ (생 략)

⑧ 공무원(배우자를 포함한다)은  
출산할 때마다 출산일로부터 1년  
이내에 30일의 범위에서 출산장  
려 휴가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 
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⑨ (생 략)

제17조 ~ 제19조 (생 략)

⑥ -- 입대 자녀-----  
---- 입대 시-----  
-----.

⑦ (현행과 같음)

⑧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있고, 분할  
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사용기  
준은 제3항 제2호의 기준을 따르  
다. <단서 삭제>

⑨ (현행과 같음)

제18조 ~ 제20조 (현행 제17조부  
터 제19조까지와 같음)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자치법규 내용	찬성 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